



김혜태

한국자원재생공사 기획개발팀장

포장의 겉과 속

package of appearance and the inside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속 다르고 겉 다르다”는 말처럼 포장에 대한 이죽거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포장이 과장의 다른 이름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있으며 오늘날처럼 그 수명을 다한 뒤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포장의 순기능과 역할은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다.

오늘날 포장폐기물의 문제는 단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일본과 미국 그리고 유럽 등 모든 나라에서 전체 폐기물 가운데 포장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폐기물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포장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구에 비해 국토가 좁아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1980년대 이후 폐기물 문제로 어려운 상황을 겪어왔으며 최근에는 포장 폐기물로 더욱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일부 포장 폐기물의 재활용율이 지극히 낮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심화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1995년 금속류와 플라스틱류의 포장폐기물 재활용율은 각각 11.4%와 5.1%에 불과하였다는 보고가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나라에서의 포장폐기물 관리정책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관리정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알아보기로 한다.

추진현황으로서는 당연히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와 포장폐기물 재활용촉진으로 나누어 생각하여 볼 수 있는데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에는 다음과 같은 도구들이 사용되고 있다. 우선 ‘과대포장규제’가 있다.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식품류, 화장품류, 선물세트 등 12개 종류의 제품에 대하여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규제하고 있다.

다음으로 ‘포장검사명령제’가 있다. 과대포장으로 인정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 수입업자에게 포장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제출토록 명령을 하는 것으로 제품제조 수입자는 명령을 받으면 20일 이내에 자비 부담으로 검사를 받아 성적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 결과 기준위반으로 확인되면 이행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받게된다. (포장전문검사기관으로는 한국자원재생공사 등이 있다)

또한 ‘포장표시권장제’도 있다. 제품제조 수입자로 하여금 제품포장의 겉면에 포장공간비율, 포장재질, 포장회수 등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 업계로 하여금 제품 출시 전 포장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 확인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을 자율적으로 감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적정포장과 환경친화적 포장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제고시키는 효과도 갖는다.

'제품의 재포장행위 억제'도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10명 이상의 매장에서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는 한 포장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데 종전에는 60명 이상 매장에 대하여 적용하던 것을 확대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리필제품 생산권고'도 시행하고 있다. 다 쓴 제품의 포장용기에 내용물을 다시 채워 용기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발상에서 도입되었다. 색조화장품, 세제류 등에 대하여 해당제품 총생산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의 관건은 이용자에게 얼마만큼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여진다. 이미 잘 알고 있는 '폐기물 부담금의 부과'도 포장폐기물 발생의 억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포장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우선 '재활용이 곤란한 합성수지 포장재 사용억제'를 들 수 있다.

이 방안에는 완구, 인형 및 조합제품에는 스티로폼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별도 분리가 곤란하여 재활용을 저해하고 소각시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PVC 재질의 코팅(도포), 라미네이팅(첩합) 및 수축포장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합성수지 포장재를 재질대체 또는 회수나 재활용 등의 방식으로 처리토록 하여 연차별로 감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였는데 계란용 난좌, 팩, 과일받침 등 식품포장용 받침접시, 컵라면

용기, 종합제품의 받침접시 등에 대하여 합성수지 포장재를 연차적으로 감량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리고 가전제품 포장용으로 쓰이는 합성수지 완충재도 연차별로 감량을 시켜나가야 하는데 용적이 30 리터 이상인 TV,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에어컨, 컴퓨터 등 6개 품목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완충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포장 폐기물에 대한 '예치금의 부과'도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포장폐기물 관리정책의 향후 계획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우선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생산자 스스로 폐기물을 회수 재활용하는 이 제도에서는 정부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목표율을 부여하면 생산자는 소재생산자, 유통업자 등과 공동으로 사업자 단체를 구성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성 있는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인데 2002년부터 본격 시행이 되면 포장폐기물 분야에서 큰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포장기준 위반 시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발생억제 대책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소비자 시민단체와의 협조도 강화하여 적정포장 환경친화적 포장제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포장의 '재질 분류표시제도'와 '재활용가능표시제도'를 2003년부터는 새로운 방식인 '분리배출표시제도'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모든 사물이나 사건은 양면성을 갖는다. 포장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포장의 결과 속을 논한다는 게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K]